#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태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190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 안태준 · 정준호 · 임광현

이연희 · 정성호 · 이병진

소병훈 • 전현희 • 이기헌

윤후덕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·지정해제 및 개발 ·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 음.

그런데, 이양 권한 중에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의2를 포함 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제13호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3호 중 "제54조 및 제57조에"를 "제54조, 제57조 및 제59조의2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59조(특례시의 사무 특례) 특례	제59조(특례시의 사무 특례)			
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				
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				
무를 처리할 수 있다.	<b>.</b>		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			
13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	13			
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22				
조의2, 제22조의3, 제22조의5				
부터 제22조의7까지, 제26조,				
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,				
제44조, 제46조, 제50조의3,				
제52조의2, 제52조의3, 제53				
조, <u>제54</u> 조 및 제57조에 따른	<u>제54</u> 조, 제57조 및 제 <u>59</u>			
물류단지의 지정・지정해제	<u> 조의2에</u>			
및 개발・운영 등의 업무				